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b>보 다 나 은 정 부</b>	
		배포일시	2018. 9. 13.(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완국, 사무관 어승복, 주무관 박권필 ·☎ (044) 201-4021, 4026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17일~26일까지 10일간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 추석 성수품 적기 배송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책기간: ‘18. 9. 17.~9. 26.(10일간)

\*\* 대상품목: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

□ 이번에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 했다.

-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어승복 사무관(☎ 044-201-4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내용

### □ 제도의 개요

#### < 통행제한 제도 >

○ 지방경찰청장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도심내 통행제한에 대하여 고시(도로교통법 제6조)

※ 각 지방경찰청장이 화물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제한을 고시(도로교통고시)

### □ 주요도시 통행제한 사례

지역별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주요내용	
	대상	제한 시간
서울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구간별 차등 적용)	구간별 차등 적용
부산	구간별 제한톤수 차등 적용	구간별 차등 적용
대구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구간별 차등 적용)	구간별 차등 적용
인천	1.4톤 초과 화물자동차 (구간별 차등 적용)	구간별 차등 적용
광주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07: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전	8.0톤 이상 화물자동차	구간별 차등 적용
울산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구간별 차등 적용)	24시간 제한

※ 세부적인 통행제한 구간 및 시간 등은 각 지방경찰청에 확인 필요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 1. 제한내용

차 종	제한 시간	제한 구역	비 고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07:00~09:00	올림픽대로 구간 (강일I.C-행주대교)	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09: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 비고

도심권 : 시청기점 반경 10Km 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대교 북단부터 성수 JC까지) - 뚝섬로(용비교 서단) - 고산자로(응봉교 남단~왕십리역 고산자교~경동시장~홍파초교~고려대 앞) - 종암로(고려대 앞 교차로~종암사거리) - 정릉로(종암사거리~길음교~국민대입구~북악터널) - 평창문화로(북악터널~신영동삼거리) - 세검정로(신영동삼거리~세검정삼거리~홍은사거리) - 연희로(홍은사거리~서대문구청 앞~연희IC~동교동삼거리) - 양화로(동교동삼거리~서교동사거리~합정역~양화대교북단)를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 2. 예외규정

가. 긴급자동차

나.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통행허가증 발급 받은 차량도 07:00~09:00, 18:00~21:00 제한)

< 붙임 2 >

15cm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인)

30cm